

2025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관련법규2
지적재조사법, 도로명주소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고득점용, 최근 법령 개정 반영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 ★ 1시간 14분 완성

도서명 : 지적관련법규2

ISBN : 979-11-7393-018-8

발간일 : 2025-05-0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000원



지적관련법규2

[목차]

제1편 지적재조사법

제1장 총칙(p6)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p9)

제3장 지적재조사위 등(p63)

제4장 보칙(p80)

제5장 벌칙(p90)

제2편 도로명주소법

제1절 총칙(p94)

제2절 도로명(p106)

제3절 건물번호(p120)

제4절 상세주소 등(p125)

제5절 국가기초구역 등(p136)

제6절 주소정보(p142)

제7절 보칙(p150)

제8절 벌칙(p153~155)

[약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지자체는 시도, 시군구

지자체장은 시도지사, 시군구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제1편 지적재조사법

(이하 법)

[약어]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청은 지적소관청

고공단 일반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부의 사항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소유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는 토지소유자협의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가) 법은

-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 재산권 보호

나) 시행령(대통령령)은 법,

시행규칙(국토부령)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 기존 지적공부를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

나. 지적재조사지구(이하 지구)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

다. 토지현황조사

-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필지별로
-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상/지하건축물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 조사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법에 규정않은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4~9조

1. 기본계획

가. 수립: 장관은 다음 포함 수립 의무

- 1) 사업 기본방향, 시행기간, 규모
 - 2)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 3) 시도별 사업비 배분
 - 4) 인력 확보
 - 5) 사업의 효율적 시행
- 디지털 지적 운영/관리 표준 제정/활용
 - 교육, 연구/개발
 - 장관 인정 사항

나. 절차

- 1) 장관은

- 수립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 등 의견 들어 계획안 작성
- 시도지사에게 안을 송부해 의견 청취 후 중앙위 심의 거침
- 중앙행정기관장에 자료 요청 가능

2) 시도지사는 안을 지체없이 소관청에 송부해 의견 청취

3) 소관청은 송부 20일내 시도지사에게 의견 제출

4)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 송부받은 날부터 30일내 소관청 의견에 자신 의견 첨부해 장관에 제출

- 기간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 간주

5) 기본계획 변경시 상기 절차 적용

- 예외) 경미한 변경(필지, 면적, 총사업비
20/100내 증감)

다. 통지 등: 장관은,

1) 기본계획 수립/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통지

2) 수립 5년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2. 시도종합계획

가.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포함

수립 의무

- 지구 지정 세부기준
- 연도별/소관청별 사업량
- 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소관청별 배분
- 인력 확보
- 사업 교육/홍보
- 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

나. 절차

- 1) 시도지사는 안을 소관청에 송부해 의견 청취 후 시도위 심의 거침
- 2) 소관청은 송부 14일내 의견 제출

- 미제출시 의견 없음 간주

3) 시도지사는 계획 확정된 때 지체없이
장관에 제출

4) 장관은 제출된 시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않으면 사유를 명시해 시도지사에
시도종합계획 변경 요구

-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5) 시도지사는 수립 5년 지나면 타당성
재검토, 필요시 계획 변경

- 변경시 상기 절차 적용

· 예외) 경미한 변경(필지, 면적, 총사업비
20/100내 증감)

다. 시도지사는 수립/변경한 때 시도 공보에
고시, 소관청에 **통지**

라. **이외** 장관이 정함

3.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소관청)

가. 소관청은

- 1) 책임수행기관에 측량/조사 등 위탁
- 2) 위탁한 때 **공보에** 다음 고시
 - 책임수행기관 명칭
 - 지구 명칭/위치/면적
 - 위탁 사항